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12월 02일

○ 회부일자 : 2013년 12월 03일

3. 제안이유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행정과	토지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5,338.0	2,200,000
	건물	가칭)예성유치원 원사 신축	1,782.0	3,247,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홍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127.0	2,154,514
	건물	울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1,457.0	2,773,146
제천교육지원청	건물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2,491.0	4,791,909
보은교육지원청	건물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추가)	400.0	1,076,895
영동교육지원청	건물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	1,161.0	2,232,000
단양교육지원청	건물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467.0	3,000,070
합 계		(8건)	15,223.0	21,475,534

①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 설립위치 :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 외 1필지
- 매입부지 : 5,338m²
- 건축면적 : 1,782m² / 112명 수용
- 취득금액 : 5,447,000천원(토지 2,200,000천원, 건물 3,247,000천원)
- 사유 : 국원초병설유치원 및 용산초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② 흥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재산위치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 건축면적 : 1,127m²
- 취득금액 : 2,154,514천원
- 사유 :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

③ 올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 재산위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11-9번지 일원
- 건축면적 : 1,457m²
- 취득금액 : 2,773,146천원
- 사유 :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내행사 공간 확보, 급식소 증축을 통한 급식환경 개선

④ 제천영어체험센터 신축

- 재산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산54번지 일원
- 건축면적 : 2,491m²
- 취득금액 : 4,791,909천원
- 사유 : 제천, 단양 북부권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점영어체험센터 건립으로 영어활용능력 향상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천영어체험센터 신축

⑤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추가)

- 재산위치 :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26-1번지 일원
- 건축면적 : 1,300㎡(기정 900㎡, 금회 400㎡)
- 취득금액 : 3,275,231천원
 - 기정 2,198,336천원(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 금회 1,076,895천원
- 사유 :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외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를 위한 시청각실(회의실) 추가 신축

⑥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 설립위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3번지 일원
- 건축면적 : 1,161㎡
- 취득금액 : 2,232,000천원(건물)
- 사유 : 이용인원 및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센터 기능 강화 및 학부모상담실 등 부족 시설 확충

⑦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 재산위치 :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58번지
- 건축면적 : 1,467㎡ /수용인원 84명
- 취득금액 : 3,000,070천원
- 사유 :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운영에 따른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증축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신설과 다목적교실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시설 신축, 지역교육청 맞춤형교육지원센터 확충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 “가칭)예성유치원¹⁾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누리과정 등

1) 설립계획 심의 경과 : 2012.11.30. 제31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부결, 2013.4.30.~2013.5.3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67% 찬성), 2013.11.26.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가결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공교육 역할 증대로 국원초병설유치원과 용산초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인 가칭)예성유치원 설립 부지와 원사를 취득하려는 것임

- “홍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은 실내행사 및 전천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
- “울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은 실내행사 및 전천후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과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조립식 급식소를 다른 장소에 신축하려는 것임
-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은 장락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1~2층 영어체험실과 3~4층 기숙사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체험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 통합 운영으로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각종 회의와 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용도실이 필요하여 증축하려는 것임.
- 영동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서고 및 행정자료실 이용으로 사무공간 부족한 물론 학부모상담실, 진단평가실 등 필요시설 확보를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
-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현재 기숙사 수용 인원이 학생 정원의 절반수준(76명)으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부담 해소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84명을 수용할 기숙사를 증축하여 전체 학생(160명)을 수용하고자 증축하려는 것임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